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단시간근로자(잠수사) 채용 공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에서 다음과 같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직종	인원	담당업무
잠수사	단시간 근로자	4명	○ 수중문화재 잠수조사 ○ 수중문화재 조사업무 보조
합계 4명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자료(사본) 필수 제출)

채용예정분야	직종	응시자격 요건
잠수사	단시간 근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수중조사나 수중작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상담센터(1577-0606)로 본인이 사전확인

3. 근무기간 : 2023. 7. 21.(금) ~ 10. 8.(일)

※ 수중문화재 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및 형태 : 08:00~17:00(휴식시간 2시간), 10일 근무 후 4~5일 휴무

※ 조사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후 생 복 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다. 보 수 : 잠수반장(일당 305,000원), 잠수반원(일당 295,000원)

※ 「2023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 근거

※ 식대 및 체제비 포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시험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임용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형식요건 서류전형)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요건 서류전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 |
|--------------------|---------------------|
| ① 공공기관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당해업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예정자가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후 아래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소견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검사비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담)

- MRI 검사

- 고압산소 압력테스트

- 특수건강검진(고기압)

※ 검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행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3.6.2.(금) ~ 6.13.(화)	방문접수(09:00~19:00)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이 한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3.6.15.(목) ~ 6.16.(금)	문화재청 및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문화재청 : www.cha.go.kr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www.seamuse.go.kr - 나라일터 : www.gojobs.go.kr
면접심사	2023.6.22.(목) ~ 6.23.(금)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3.6.28.(수) 예정	문화재청 및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시간 :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겹봉에 “응시원서 재증” 표기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 접수처 : (32132)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잠수사 채용담당자 앞
 -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붙임서식 1)
- 나.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2)
- 다. 이력서 1부(붙임서식 3)
-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4)
- 마.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5)
- 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붙임서식 6)
- 사. 자격증(잠수기능사 등) 사본(필수)
- 아. 잠수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필수, 반드시 담당업무 표시, 사본가능)
-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군필 여부 확인용)
- 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 시)

9. 재공고 사항

- 가.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바.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 담당자 (☎ 041-419-7042)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서식-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응시 분야
	단시간근로자(잠수사)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수) * 서식 1호	
2. 응시원서(필수) * 서식 2호	
3. 이력서(필수) * 서식 3호	
4. 자기소개서(필수) * 서식 4호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서식 5호	
6. 자격증(잠수기능사 등) 사본(필수)	
7. 잠수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필수)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경력증명서 - 또는, 4대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 또는,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	
8. 주민등록 초본(남자에 한함, 군필여부 확인용)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 시) * 서식 6호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붙임서식-2]

응시원서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단시간근로자(잠수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 접수 번호			응시분야	단시간근로자 (잠수사)	사진부착 불요함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연락처	(집)전화 : ()		휴대폰 :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시표					사진부착 불요함
< 단시간근로자(잠수사) 채용시험 >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시 번호			응시분야		
2023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인 또는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붙임서식-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